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3097)

2025. 09. 0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3097

I. 동의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제출일자 : 2025. 08. 11.

다. 회부일자 : 2025. 08. 14.

2. 제안이유

가. 서울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적정’이었으며,

다. 협약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양질의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3,547,413천원('25년) ※ 민간위탁금: 2,541,693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2025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25.7.18.) : 적정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복지정책과-14101, '23.6.21.)
- 추진 필요성
 -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신체·정신질환, 질병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 대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시설로,
 - 정신질환·고령·장애인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사례관리, 심리상담, 치료재활, 복지자원 연계 등 노숙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지원이 필요하므로
 - 자활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 시설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 노숙인 알코올해독센터 운영
- 알코올의존·정신질환을 지닌 노숙인 재활지원
- 지원주택,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탈시설·탈노숙인 지역사회 정착(취업 및 주거지원)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및 응급쉼터 운영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설립일자 : 2004.2.1.
- 시설위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 시설규모 : 3,372㎡(2개 동(가, 나동) 각 2층)
- 시설구성 : 생활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체력단련장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5항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항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의 협약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사무
 - 시설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 노숙인 알코올해독센터 운영
 - 알코올의존·정신질환을 지닌 노숙인 재활지원
 - 지원주택,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탈시설·탈노숙인 지역사회 정착(취업 및 주거지원)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및 응급쉼터 운영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위탁범위 : 시설형 사무위탁
- 위탁기간 : ‘26. 1. 1. ~ ‘30. 12. 31.
-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사북) 한울정신건강복지 재단	‘04.2.1~ ‘25.12.31. (총 6회, 현 법인과는 3회)	2,542백만원 (25년 예산)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노숙인 관련 주요현황

-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는 1만 2,725명으로, 21년 대비 1,579명(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노숙인 중 51.2%인 6,633명이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7%(1,0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일시집계조사를 실시해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24년 일시집계조사를 통해 집계된 노숙인 수는 3,06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외에도 노숙인시설(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등)을 운영하며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음.

나.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는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노숙인 재활시설로, 알코올사용장애, 정신질환 남성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재활시설임.

※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서울시 내 노숙인 재활시설은 총 7개소이며, 그 가운데 시립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비전트레이닝센터 1개소임.
- 해당 사무는 노숙인 가운데서도 알코올사용장애, 정신질환을 지닌 노숙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원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 및 운영 현황

- 비전트레이닝센터는 2004년부터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4년 최초위탁시부터 9년간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해오고 있음.

<표>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3년 ('04.2.1.~'06.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공개모집	
2차 위탁	3년 ('07.1.1.~'09.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계약	
3차 위탁	3년 ('10.1.1.~'12.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계약	
4차 위탁	3년 ('13.1.1.~'15.12.31.)	(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공개모집	
5차 위탁	5년 ('16.1.1.~'20.12.31.)	(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재계약	
6차 위탁	5년 ('21.1.1.~'25.12.31.)	(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공개모집	

- '25년 6월 기준 시설의 세부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세부 시설 현황	시설명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시설유형	생활시설(남성노숙인 재활시설)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연락처	02-2243-9183
	시 설 규 모	토지 4,793㎡, 건물(2개 동, 1,693㎡)	소유자	서울특별시
	직원 수	29명	운영방법	민간위탁
	설립일	2004.02.01.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 : 이영표)
	입소인원	119명('25.6월말 기준) ※ 21년 119명, 22년 114명, 23년 122명, 24년 117명(연말기준)		
	총 사업비	3,547백만원('25년, 시비 2,732백만원)		

시설 현황		가동	2층	생활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세면장/화장실, 휴게실
			1층	식당, 회의실, 세탁실, 보호작업장, 보일러실, 세면장/화장실, 당직실
		나동	2층	생활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독서실, 세면장/화장실, 휴게실
			1층	생활실, 사무실, 세면장/화장실, 치과진료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외부	1층	외부생활실, 격리실, 간이화장실, 분리수거장

○ 위탁기간 내('21~ '24년) 시설의 주요 운영성과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추진성과 >

▶ 노숙인 정신건강 특화 전문서비스로 기능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 (안전·건강지원) 건강검진·상담, 병원치료 연계, 만성질환 관리 등 (520,366명)
- (알코올·정신질환 재활) 심리검사·심리상담, 정서·스트레스 관리, 자존감 회복(242,558명)
- (일자리·신용회복) 공공·민간일자리, 신용회복 지원, 저축관리, 취업 및 자격증 상담 등 (38,209명)
- (지역사회 연대) 정신건강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상담·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440명)
- (거리노숙인 보호) 서울 동북권 노숙인 거리상담, 복지시설 연계, 응급구호로 탈노숙 (25,095명)

▶ 노숙인 자립(지역사회 복귀)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비스 제공	828,878	183,325	194,822	213,872	236,859
자 립	125	44	32	36	13

※ 자립(지역사회 복귀) 유형 : 공공임대주택/지원주택 입주, 취업 후 퇴소,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 전원, 귀가 및 가족 복귀

- ‘2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²⁾에서는 종합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평가 결과에서는 생활의 건강 및 식사지원, 재활사업의 체계성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정신건강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활동 등에서 우수사항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안전관리 계획서 상 안내방송 미기재, 피난시 행동 요령 등에서 감점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평가 결과》						
구분	총합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시설 운영전반
만점점수	104	16	32	32	24	정성평가
현장평가	99.5	12	31.5	32	24	정성평가
평가등급	A	C	A	A	A	C

→ 전체 A등급 달성 및 재정·조직운영,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

- 해당 사무는 2025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등급을 받아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임.

3 종합의견

-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³⁾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의해 3년마다 실시되며,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의해 실시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하나, 보건복지부 평가로 대체함.

- 2024년 노숙인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음주 비율은 23.7%이며,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은 28.7%로 나타남.
- 이는 직전 실시된 2021년 조사결과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숙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취업자 비율(75.7%)도 여전히 높은 편으로 조사됨.
- 본 사무는 서울시의 노숙인 가운데서도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 질환 등의 이유로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전문 재활시설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단, 현재 시설을 위탁 중인 법인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재선정 절차를 준수해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음.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